

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,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.

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, 납기 준수 등을 강화한다.

안전관리물자*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,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.

* 국민의 생활안전, 생명보호, 보관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중 조달 공급 규모와 안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

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,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,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.

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(구독)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.

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,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.

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“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”며 “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,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이현우 (042-724-7108)
		담당자	서기관	박새라 (042-724-7185)



1. 공정한 경쟁 질서 및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제 (예시)

1. 상용SW 납품요구 외 추가 물품 무상 제공금지 조항 신설

- **(현황)** 납품요구서 외 물품(HW, CCTV, LED 조명 등 계약 외 물품)을 수요기관에 무상 제공하여 지속적 문제 야기
- **(개선)**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무상제공 금지 규정 신설
- **(효과)** 무상 증정에 따른 공정 경쟁 저해 방지와 계약질서 유지 강화
- **(계획)** 「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」 개정 (완료)

2. 물품 다수공급자계약(MAS) 할인행사 불허 기간 단축^{전수조사}

- **(현황)**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할인행사는 할인행사 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
- **(개선)** 불허 기간을 폐지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
- **(효과)** 기업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
- **(계획)**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」 개정

3. 상용 소프트웨어 할인행사 횟수 확대^{전수조사}

- **(현황)**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에서 계약 기간에 따라 할인행사 횟수를 제한
- **(개선)** 할인행사 횟수 제한을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3회로 완화
- **(효과)** 계약 연장 시 제한되던 할인행사 기회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
- **(계획)** 「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」 개정 (완료)

2 국민생활 밀접 조달 물자의 품질, 납기 준수 등 강화 과제 (예시)

1.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기준 강화

- **(현황)** 국민 생활안전, 보건위생 등 물자 중 조달 규모,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나 점검 주기(7~8년)가 길어 개선 필요
- **(개선)** 중요도에 따라 안전관리물자 등급을 세분화*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
* [예시] 안전물자 1~2등급 → 1등급(1년 주기 점검), 2등급(2년), 3등급(3년)
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실적 연간 1,000건 → 4,000여건으로 확대 예상
- **(효과)**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로 고품질 조달물자 납품 확대
- **(계획)** 「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」 개정

2.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 평가 체계 강화 현장의견

- **(현황)**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본 공사가 지연되어 사급대체, 공기연장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시 납기지체 비중 강화 필요
- **(개선)**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적기납품 세부평가기준 개선
- **(효과)**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기 납품으로 적기 공사 기간 관리에 기여
- **(계획)** 「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」 개정

3.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지체 평가 개선 현장의견

- **(현황)** 년 2회 상·하반기에 평가하는 납기 지체 일수가 평균으로 반영되어 특정 기간 결과로 계속 불이익을 받는 등 불합리
- **(개선)** 평균 납기지체일수의 평가지표를 납품 기한 초과 건의 지체일 수의 합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이행실적 평가의 납기지체관련 항목 개선
- **(효과)**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평가 공정성 강화
- **(계획)**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」 개정 추진

3 현장 목소리 반영,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 과제 (예시)

1. 우수조달물품 임대서비스 제공 현장의견

- **(현황)** 우수제품의 고가·첨단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임대(구독)* 방식 필요
* '24년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구매로 제한되던 수의계약이 임대, 구독까지 확대
- **(개선)** 우수제품도 임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 마련
- **(효과)** 수요기관에 다양한 조달방법 제공하고 우수제품 업체 판로 지원
- **(계획)**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」 개정

2. 공사가 포함된 물품·용역 납품실적증명 시스템 개선 현장의견

- **(현황)** 물품(용역)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이더라도 납품실적 증명서에 공사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자료 추가 제출 필요
- **(개선)** 물품(용역)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물품(용역) 납품실적증명서상 인도조건*과 공사면허**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양식 및 시스템 개선
- **(효과)** 실적증명을 위한 조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
- **(계획)**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

3. 가격입찰 후 PQ평가 (선입찰) 적용 확대 현장의견

- **(현황)** PQ준비에 따른 서류작성 등 중소기업은 수주 실패 시 누적되는 경영 부담으로 인해 입찰 참여 위축 및 시장 진입 기회가 제한
* 1개 업체당 PQ서류 약 1,500 페이지(인쇄제본비 등 건당 1~4백만원 소요) 작성 및 제출
- **(개선)** 예정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(국토부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외한 기술용역에 적용)
* (현행)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용역 →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으로 대상 확대 적용
- **(효과)** 절차 합리화 및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의 입찰 참가 편의성 제고
- **(계획)** 「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개정